

## 2019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안내

###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

<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(추가) 채용한 우선지원대상·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>

#### □ 지원대상 기업

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(18년 연평균 기준)인 우선지원대상·중견기업이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(추가) 채용한 사업주
  - ※ '19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,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일 것
  - ※ 단, 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피보험자 수 1인~4인도 가능
  - ※ (지원제외) 부동산업, 소비·향락업, 국가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등을 받는 사업장, 관련사업주 등

#### □ 기업 요건

① 기업 규모에 따라 2019년도에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(추가) 채용

기업규모별 지원대상 고용 요건	기업 규모	청년 신규채용
	30인 미만	1명 이상 채용 시 지원
	30인~99인	2명 이상 채용 시 지원
	100인 이상	3명 이상 채용 시 지원

②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(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) 보다 2019년에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, 기업 전체 근로자(피보험자)수 증가(매월말일 기준으로 증가여부 판단)해야 함

- ※ (예시) '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인 기업에서, '19년에 청년 1명을 정규직 신규(추가) 채용하고, 월말 기준 11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지원가능

#### □ 신규채용 청년 요건

- '19.1.1.이후 만 15~34세(군필자 의무복무기간 비례)의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
  - \* 인턴·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,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(인턴·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)한 경우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
  - ※ (지원 제외) ①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근로자, ②채용일 기준, 대학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(단, 대학·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, 고등학교·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가능), ③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인척, ④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, ⑤ 채용일 기준,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자 등
- 월임금이 1,745,150원(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) 이상 일 것
  - \* 시간제근로자로서 월임금이 80만원 이상 1,745,150원 미만인 경우, 지급 임금의 1/3 지원

##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

### □ 지원 수준

-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 신규(추가)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(월 75만원)
- 30인 미만은 1명만 추가고용해도 지원, 30~99인은 2명 이상 추가채용 시 지원,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추가채용 시 지원(채용인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)

기업규모 \ 지원(예시)	1명 고용	2명 고용	3명 고용	4명 고용	.....
30인 미만	900만원	1,800만원	2,700만원	3,600만원	.....
30~99인	x	1,800만원	2,700만원	3,600만원	.....
100인 이상	x	x	2,700만원	3,600만원	.....

※ 2019년도 신규 지원인원 목표(9.8만명)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 소진된 경우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

### □ 지원 한도: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

### □ 신청시기 및 지원기간

- 청년 채용 후,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(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 보다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날)부터 6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해야만 지원 (6개월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지급)
  - 청년 채용 후,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신청서 제출
  - ※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(추가)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요건 충족 '월'은 지급, 요건 미충족 '월'은 부지급
- 기업을 기준으로, 청년 채용 후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최초 지원기간이 시작(기간의 중단없이)되며 3년간 지원
  - ※ 기업의 최초 지원 시작일 이후 추가로 채용된 청년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되는 것은 아님 (기업의 지원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고정)

## 지원신청 방법 등

-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고용센터(기업지원팀)에 방문·우편 신청 또는 고용보험시스템(www.ei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
  - (신청 서류) 「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」,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, 월별임금대장, 임금지급증빙서류, 확인서 등

☞ 세부내용: <부천시역> 「부천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」 → 공지사항(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)  
 <김포지역> 「김포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」 → 공지사항(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)

문의·상담

☎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없이) ☎ 1350